



# 농림축산검역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(LPSMS) 개선 사항 알림

## 1. 관련

가.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(식약처고시 제2017-68호, '17.8.8.)

나.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69호('21.1.25.개정, '21.7.26.시행)

2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이 신설되어 도축 의뢰인 기준 도축 검사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(LPSMS)의 기능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으니, 담당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□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(LPSMS) 개선 사항

- 도축검사증명서 뒷면 서식 출력기능 신설
- 도축의뢰인 기준 도축검사증명서의 중량가져오기 기능 신설

### <주요 내용>

구분	변경 사항	세부 사항
도축검사증명서 뒷면 서식출력 기능 신설	도축 의뢰인 기준 도축검사증명서 상 다수의 이력번호 표시 출력 가능	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(LPSMS) → 도축검사 → 도축검사증명서발급 → 출력관리 → 증명서 구분:의뢰인별 출력
도축의뢰인 기준 도축 검사증명서의 중량가져오기 기능 신설	도축검사증명서발급 시 의뢰인별 출력관리에서 지육중량 및 지육외중량을 가져오는 기능 추가	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(LPSMS) →도축검사 → 도축검사증명서발급 → 출력관리 → 증명서 구분:의뢰인별 출력 → 지육중량가져오기 → 지육중량저장 → 의뢰인별 도축검사 증명서 출력

붙임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개선사항 1부. 끝.

## 농림축산검역본부장



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(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), 방역감시과장, 동물약품평가과장, 세균질병과장, 조류질병과장, 검역본부장, 검역본부장, 시도 및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, (사)전국한우협회, (사)대한한돈협회,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

주무관 김민경 수의사무관 이민혜 동물검역과장 백현 전결 2021. 8. 2

협조자

시행 동물검역과-6349 (2021. 8. 2.) 접수

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, 김천시 혁신8로 177 (울곡동) / <http://www.qia.go.kr>

전화번호 054-912-0429 팩스번호 054-912-0431 / [dasom123@korea.kr](mailto:dasom123@korea.kr) / 대국민 공개